

학칙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의3(실습학기제) ① (삭 제) ② 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습학기제 또는 <u>인턴십학기제</u>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29조(수업) ① 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방송·통신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28조의3(실습학기제) ① 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29조(수업) ① 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<u>계절수업</u>,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 및 <u>현장실습 수업</u>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
<p>부 칙 신설</p>	<p>부 칙 제1조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